

## 법학 관련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내규

제정 2020. 3. 1.

<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>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각종 법학 관련 경연대회 참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① 이 내규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학 관련 경연대회는 [별표1]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경연대회 외의 경연대회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법학 관련 경연대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3조(절차) ① 이 내규에 의한 법학 관련 경연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지원센터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[별표2]에 따른다.

③ 경연대회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출은 학생 명의의 카드로 사용하여야 하며, 반드시 증빙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내용) ①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 내규에 의한 법학 관련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, 회의비, 인쇄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경연대회 시행 장소가 수도권 외 지역일 경우 상한액과 별도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 수도권 내 지역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고 지역과 상관없이 택시, 시내버스, 지하철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지도교수의 배정) ①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 내규에 의한 법학 관련 경연대회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공교수를 지도교수로 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상한액) 팀 내 인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 팀당 상한액에 근거하여 지원한다.

1. 팀 내 인원 4인 이하: 최대 250,000원
2. 팀 내 인원 5인 이상: 최대 350,000원
3.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참가 팀: 최대 400,000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구 규정의 폐지) 2019년 3월 1일자로 제정한 「법학 관련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규약」은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[별표1] 지원 대상 법학 관련 경연대회

1. [특허청]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
2. [방송통신위원회]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
3. [국민권익위원회]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
4. [법무부] 법령경연 학술대회
5. [헌법재판연구원]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
6. [법원]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
7. [국방부]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
8. [공정거래위원회]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
9.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
10. [외교부]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



[별표3]

## 경연대회 지원비 증빙 영수증

법학전문대학원		청구자		청구금액	
학년도/학기		청구일자			
지출내역	*경연대회 준비과정에 사용한 내역을 간략히 기재바람				
기타 (특이사항)					
(영수증 첨부란)					
<p>* 이 칸에 영수증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영수증이 여러장인 경우 별지를 여러장 사용하여 제출 가능)</p> <p>*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 및 규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.</p>					

(영수증 첨부란)

\* 이 칸에 영수증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 별지를 여러 장 사용하여 제출 가능)

\*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 및 규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.